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
제21기 자문위원 청년참여 공모

1 **임　　기 :** 2023. 9. 1. ~ 2025. 8. 31.(2년)

2 **공모인원 :** 1,000명

3 **응모자격 :** 18세 이상 45세 이하(*1977.9.2 이후, 2005.9.1 이전 출생자)
국내에 주소지를 둔 대한민국 국적자

<응모 제한 대상>
- 현직 공무원(임기제 공무원, 국회의원 보좌관·비서관 등 포함)
  * 단, 연구직공무원, 교육공무원(교수, 교사)은 응모 가능
- 최근 5년 이내에 「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」 제1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'해촉'된 인사
- 제20기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인사(중도 사직자 포함)

4 **공모기간 :** 2023. 5. 8.(월) ~ 6. 16.(금)
(우편접수는 마감일 소인까지 유효)

5 **지원방법**

○ 제21기 자문위원 후보자입력시스템 접속 후 자료 입력
- 주소 : https://peace.nuac.go.kr/ccis * PC로만 작성 가능

○ 온라인 접수가 어려울 경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홈페이지(www.puac.go.kr)에서 서식을 다운로드, 내용 작성 후 등기우편으로 제출

<작성 서류>
- 제21기 자문위원 후보자 카드 및 활동동의서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
- 자기소개서

⑥ 선정절차 및 결과통지

○ 위촉 절차

공모	⇨	심사	⇨	적격자 선정	⇨	제청, 위촉
개인공모		「청년참여공모 심사위원회」 구성, 심사		활동 의지, 대외 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		사무처장 제청 대통령 재가

○ 지원자가 제출하는 서류를 통해 자문위원으로서의 활동 의지, 관련 활동 등을 감안하여 심사·선정

○ 심사 결과 최종 선정된 명단을 8월 중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홈페이지에 공지

⑦ 기타사항

○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,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위촉을 취소할 수 있음.

※ 문의 :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남부지역과

(☎02-2250-2388, 2272)

붙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개

1 기능

<설치근거 :「대한민국헌법」 제92조>

"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**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**를 둘 수 있다."

다음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함
(「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」 제2조)

- o 통일에 관한 국내외 여론 수렴
- o 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의 도출
- o 통일에 관한 범민족적 의지와 역량의 결집
- o 그 밖에 대통령의 평화통일정책에 관한 자문·건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2 자문위원의 임기 및 역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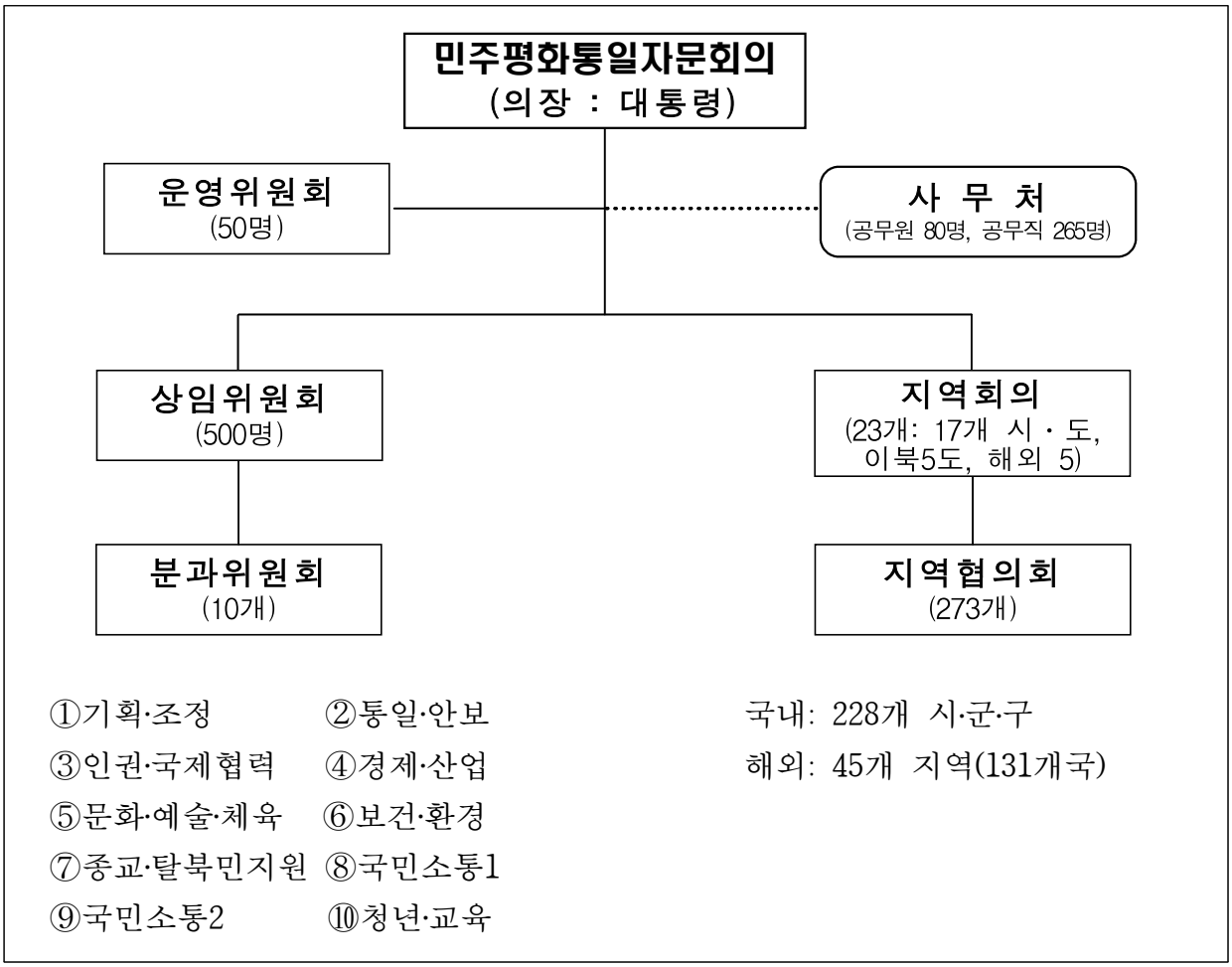
○ 임기 : 2년, 무보수 명예직

○ 역할

- ▪ 민주평통의 기능 수행을 위해 다양한 평화통일활동을 전개
- ▪ 법정회의 참여, 지역회의·협의회 통일활동 추진 및 참여
  - 전체회의/지역회의 참여 : 연 1회
  - 지역협의회 정기회의 참여 : 연4회(분기별)
  - 지역회의·협의회 평화통일활동사업 등(수시)
- ▪ 온라인 및 SNS 평화통일활동(온라인 통일정책제안 등 : 수시)

※ 특히 청년위원은 지역회의 청년위원회, 협의회 청년분과위원회 등을 통해 청년세대 맞춤형 통일공감사업을 추진하고, 통일공감대를 확산하는 역할을 수행

3 조직


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
(의장 : 대통령)
운영위원회
(50명)
사 무 처
(공무원 80명, 공무직 265명)
상임위원회
(500명)
지역회의
(23개: 17개 시·도,
이북5도, 해외 5)
분과위원회
(10개)
지역협의회
(273개)
①기획·조정
②통일·안보
③인권·국제협력
④경제·산업
⑤문화·예술·체육
⑥보건·환경
⑦종교·탈북민지원
⑧국민소통1
⑨국민소통2
⑩청년·교육
국내: 228개 시·군·구
해외: 45개 지역(131개국)